

제1장 일반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

제1.2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 간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WTO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양 당사국 간의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을 고려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서로 협의한다.

제1.4조 의무의 범위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조건으로, 자국의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중앙 및 지방 정부나 당국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그 밖의 기관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상의 모든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1.5조 일반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협정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한다.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그리고

나. 조지아의 경우, 국세청(재무부 산하 공법인)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관세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 또는 부과금(종류를 불문한다)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

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관세
-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 라.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 마. WTO 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법 및 규정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이동 또는 보관, 관세 당국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운영 및 집행, 그리고 그 법적 권한에 따라 관세 당국이 제정한 모든 규제에 관한 법적이고 규제적인 규정을 말한다.

관세평가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존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WTO 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 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당시 발효 중이며 수시로 개정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에 포함된 모든 법적 주석에 정의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체계를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18.2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한국-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법인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법적 실체를 말한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국적법」¹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조지아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조지아 시민권에 관한 조지아 기본법」상 의미에서 조지아 시민인 모든 인

¹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은 이 협정상의 혜택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원산지 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가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²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에서 그러한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나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일 수 있다.

-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 및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 나. 조지아의 경우, 이 협정은 조지아 법률에 정의된 조지아의 전 영역에 적용되며, 이는 조지아가 주권을 행사하는 영토와 그 하층토 및 그 상공, 내수 및 영해, 해저와 그 하층토 및 그 상공, 또한 조지아가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에 인접하는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다.

무역원활화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³

WTO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WTO 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효 중인 모든 면제를 포함한다.